

KCS 64 10 35 : 2023

시공 및 준공요건

2023년 01월 제정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CS 64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 월)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발전 등 건설기술 발전에 현추세(現 趨勢) 반영, 개정	개정 (197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해외자료의 분석과 관련 각종 시방서, 시설기준 및 제규정 등과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여 반영, 개정	개정 (1986.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환경의 변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품질향상 기준을 구체화 하고, 환경보호와 지반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 보완, 개정	개정 (1996.1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로 개칭하고,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내용 반영 등 대폭 개정	개정 (2005.11)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태풍, 이상파랑 및 지진해일 등 이상기후 대응과 저탄소, 온실 가스저감 등 녹색항만 및 친환경 설계 반영, 매스 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 필터매트, 함선, 마리나시설 관련 시방 보완, 개정	개정 (2012.1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00 00)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표준시방서를 시방코드(KCS 64 00 00)로 개편하고, 타 분야 시방코드와 중복·상충 항목을 비교, 검토하여 보완	개정 (2017.08)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00 00)	• 기존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항만 건설공사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 코드화하고, 특수 분야 공사는 전문시방서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코드체제로 개편	개정 (2018.04)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10 35)	• 국가건설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와 연계하기 위하여 기존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의 공사준공 관련 내용과 시공 요건을 신설하여 제정	제정 (2023.01)

제 정 : 2023년 01월 30일 개 정 : 20 년 월 일
 심 의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소 관 부 서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한국항만협회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요건	2
1.5 준공요건	3
 2. 자재	6
 3. 시공	6

KCS 64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등의 시공요건과 준공절차 등의 준공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과 관련 법규에 따른다.
- (3)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05 공사일반(1.1.2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해양수산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2.3 관련표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공 및 준공요건

1.4 시공요건

1.4.1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5 (1.4 공사현장관리)에 따른다.

1.4.2 주변 구조물 보호

(1) 주변 구조물 보호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5 (1.5 주변 구조물 보호)에 따른다.

1.4.3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5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에 따른다.

1.4.4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5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에 따른다.

1.4.5 시공관리조직

(1) 시공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5 (1.8 시공관리조직)에 따른다.

1.4.6 공사기록

(1) 공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5 (1.9 공사기록)에 따른다.

1.5 준공요건

1.5.1 준공 절차

(1) 예비준공검사

-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04조 ⑤항에 의거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 주무부서에 준공 45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2 예비 준공검사)에 따른다.

(2) 준공서류

- ①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11 준공서류)에 따른다.
 - ②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유형, 원인 및 조치결과 등)
 - ③ 보관용 도면 : 최초 도면으로부터 변경된 작업범위를 표시한 도면과 최종 시공 제작도면(전자문서 포함)
 - ④ 보관용 시방서 등 : 공사 기간 중 각종 양식으로 발행한 추가보고서, 설계와 공사 변경 명령 및 이와 유사한 변경사항이 포함된 자료
 - ⑤ 시공상세도면
 - ⑥ 준공사진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전자문서
 - ⑦ 최종현황 측량보고서 : 측량 원부 및 원도면이어야 한다.(실시할 경우)
 - ⑧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최종기록 자료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한 수급인은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 및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국토안전 관리원에 각 1세트씩 제출해야 한다.
- ① 준공도면
 -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③ 구조계산서
 -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⑤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 (4) 조정된 계약금액, 기 수령액 및 수령 잔액을 명기한 최종기성부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5) 발주자는 준공완료 전이라도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6) 도구, 부품, 잉여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 확정하여 발주자에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 (7)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과 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전을 끝내고 발주자에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정리하여 제출한다.
- (8) 준공검사 내용
-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3 준공검사 내용)에 따른다.

1.5.2 최종 현장 청소 및 출입통제

- (1) 최종 현장 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에 따른다.

1.5.3 시운전

- (1) 시운전은 KCS 10 10 35 (1.14 시운전)에 따른다.
(2) 운전 장비와 기기는 운전하기 쉽고, 장애 없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1.5.4 공사기록문서

- (1)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현장에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기록해야 한다.
- ① 시방서
 - ② 도면
 - ③ 공사 관련 추가내용
 - ④ 설계변경 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 ⑤ 확인된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 ⑥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 ⑦ 기성검사 및 공사 시행 중 협의되어 공사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내용이 수록된 각종 회의록 및 관련 자료
- (2) 공사기록 문서는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 (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5) 공사시방서에는 설치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목록과 주요 예비부품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① 제작자의 명칭, 제품 모델 및 번호
 - ②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 ③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 (6) 도면과 시공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 시공 치수를 기록해야 한다.
- ① 마무리된 바닥 면에서 쉐 기초의 깊이
 - ② 영구적인 부지공사 시 설치된 지중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 ③ 시야에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지장물에서의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 위치

- ④ 공사목적물의 각종 수평 또는 수직 치수와 높이
 - ⑤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세도
 - ⑥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내용
- (7) 공사기록 문서는 준공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5.5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 (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에 따른다.
- (2) 자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치 또는 사용하기 편리한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 (3)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 (4)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 (5)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 편으로 구성한다.
 - ① 제1편 :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 ②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 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 가. 주요 설계기준
 - 나. 기기 목록
 - 다. 부품 목록
 - 라. 운전 지침서
 -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 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바. 청소 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수지침서
 - ③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 가. 시공도면과 제품자료
 - 나. 제품 및 설치확인서 등
 - 다.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 (6) 준공검사 15일 전에 원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공사감독자의 검토소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 제출 전에 요구된 대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7)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에 수정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 및 준공요건

1.5.6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 (1)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KCS 10 10 35 (1.16 보수예비품)에 따른다.
- (2)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에 공사 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5.7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 (1)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2) 준공계 제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 (3) 제품보증서 등의 명의를 발주자로 해야 한다.

1.5.8 시설물 인계·인수

- (1)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5 (1.15 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다.
- (2) 수급인은 준공검사 후에도 공사감독자의 준공 잔무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제정)	총괄	안익성	(주)항도엔지니어링	사장
	항만및해안	김진호	(주)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
	항만및해안	류혁근	(주)삼영기술	부회장
	품질및안전	강기중	코모씨스(주)	대표이사
	품질및안전	이상웅	(주)항도엔지니어링	부사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이재진	한국항만협회	부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박수현	한국항만협회	차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홍성현	한국항만협회	과장

심의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제정)	항만및해안	고장희	S K 에코플랜트(주)	프로
	항만및해안	이명호	(주)헤인이앤씨	부사장
	항만및해안	조충현	인천항만공사	실장
	토목시공	류성구	S K 에코플랜트(주)	프로
	토목시공	문성현	(주)건화	이사
	토목시공	허정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실장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제정)	의 장	이 수 호	해 양 수 산 부	국 장
	항 만 개 발	이 종 인	전 남 대 학 교	교 수
	항 만 개 발	우 수 한	중 앙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김 영 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 구 위 원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김 인 호	강 원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정 민 영	(주) 유 신	부 사 장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조 미 라	인 덕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송 정 화	부 산 항 만 공 사	부 장

해양수산부	성명	소속	직책
	이 수 호	항 만 국	국 장
	전 충 남	항 만 기 술 안 전 과	과 장
	이 귀 섭	항 만 기 술 안 전 과	시설사무관
	김 슬 기	항 만 기 술 안 전 과	시 설 주 사

표준시방서
KCS 64 10 35 : 2023

시공 및 준공요건

2023년 01월 30일 제정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707호

☎ 02-2165-0091~3 E-mail : kpha@koreaports.or.kr

<https://www.koreaports.or.kr>

항만기술기준센터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05호

(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 02-2165-0103~6 E-mail : kpcs@koreaports.or.kr

<https://kpcs.portcals.go.kr>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 5952

<https://www.mof.go.kr>